안산대학교	홍보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44
		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홍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홍보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내외의 홍보에 관한 사항
3. 홍보물의 제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4. 기타 홍보와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전략기획처에 담당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